(2) 기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PSC거더 제작장 선정 시 안전조치 사항

- (1) PSC거더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2) 제작장의 지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3) 제작된 PSC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4) 홍수위(H.W.L) 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(5) 풍수해의 영향, 지하매설물의 유무, 공사에 의한 공해 등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.

5. PSC거더 제작대 설치시 안전조치 사항

- (1) 제작대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2) 제작대는 지면 보다 높게 설치하여 작업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 해 체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불의의 사고로 거더가 전도될 경우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또는 거더간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제작된 순서대로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.